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김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장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함윤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민영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주요 ADR 15개 기관과 조정학회, 로스쿨, 각종 분쟁해결연구센터 등 ADR관련 학계, 법조계 등에서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패널토론, 종합토론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I. 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근대화의 시작이 늦어진 우리의 현실상, 서구의 새로운 제도나 그 밖의 인기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그때그때 소개되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과 관련된 많은 제도도 여기에 해당하고,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ADR뿐만 아니라 IMF사태 이후의 각종 입법논쟁이나 최근의 로스쿨도입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과연 서구의 ADR제도를 우리가 많이 수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또한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형시켜 가는 것이 좋고, 그를 위해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가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함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현재의 각종 ADR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 행정형 ADR기관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에 관하여 언급하려는 것이다.

II. ADR의 의의 및 특징

ADR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대체적



권 성 위원장이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외)분쟁처리를 가리키고, 이것은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민사분쟁)처리제도의 총체를 말한다. ADR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어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라는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제각기 재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발달해 오다가, 근래에 이르러 ADR이라는 통합적인 명칭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연구되기에 이르렀다. 대체적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에 대체하거나 보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소송대국인 미국에서 ADR이 실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발달해 온 것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²⁾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먼저 재판(소송)이 있다.

재판은 법관이 법에 의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일도양단하여 승패를 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민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되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로 된 자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는 한 원고의 제소에 응할 의무가 부여된다(만일 피고가 응소를 거부한다면 패소를 하게 된다). 다른 한편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재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만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처리로서 ADR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 3가지 분쟁처리형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구상, 법원부속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한 국민불만의 해소방안, 법학논문집(중앙대)23집2호(1999)131면에서는, 미국에서 ADR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생활규범을 가진 이민족이 미국에는 다수 존재하므로 동일민족 내의 분쟁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은 당해 민족 내의 규범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 인구에 비해 법률가의 비율이 높은 만큼 소송사건수가 많아 법원부담의 경감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미국에는 배심재판과 같이 재판에 국민이 참가하는 사상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시민 간에 자주적인 민사분쟁 해결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보통법체계에 대한 형평법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2) 따라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ADR에 관한 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물이 많이 나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종 ADR기관의 도입에 따라 연구도양이 형성되었고 앞으로 로스쿨에서 ADR을 강의하게 된다면 수준 높은 연구물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ADR도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I. ADR의 현황

1. 현황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분쟁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분쟁 당사자는 먼저 상호간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무엇인가 제도적인 힘을 빌려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당사자 간의 접촉단계를 보통 교섭(negotiation)³⁾이라 말할 수 있는데, 교섭은 모든 분쟁해결의 제1단계에 해당하고, 교섭을 통해서 바로 화해에 이를 수도 있다. 교섭의 결렬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국가권력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재판이 있기 이전에 조정이나 중재제도가 존재하였다. 특히 조정은 동양에서, 중재는 서양에서 재판제도의 등장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ADR은 재판과 동시진행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이외에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 행정부처가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즉 거의 모든 행정부처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법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조정을 하고 있다.⁴⁾ 그러나 행정형 조정건수는 몇몇 기관을 제외하면 법원에 의한 조정건수와 비교하

여 볼 때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이다.

중재제도에 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심이 되어 상당한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 행정형 조정기관에서도 중재로 분쟁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관에서 중재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행정형 ADR기관

한편 우리나라에서 ADR의 운영기관이라고 하면 전술하였듯이 각종 행정부서의 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기본적으로 행정형 ADR기관에 해당한다고 풀이된다. 행정형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행정형 ADR이 많은 점은 일본 ADR의 특징이기도 하다.

행정형 ADR은 일반적으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수수료에 의하므로 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고 구제에 대한 액세스 확대에 기여한다.⁵⁾ 그 밖에 행정적 규제를 배경으로 하며 후견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격차의 축소, 전문적 조사에 의한 사실의 명확화 등의 대책에 의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도 말해진다.⁶⁾

이러한 행정형 ADR기관으로서의 특징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환경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를 비교하여 생각하여 보도록 하겠다. 먼저 행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할 수 있다.⁷⁾ 즉 환경분

3) 보통 협상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상거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섭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검색에서 조정위원회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법령을 찾아보면 그 숫자가 대단히 많다.

5)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2008, 日本評論社)119면.

6) 加藤新太郎, ADRとその普及の條件 - 訴訟上の和解との比較において -, 小島武司編・ADRの實際と理論II(2005, 中央大學出版部)13면.

7) 이에 관하여는 김상수,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분담, 환경법연구제28권1호(2006)123면 이하 참조.

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타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예로 든다면, 건설교통부가 2004년 4월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은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은 2005년 7월 1일부터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제18조에 의하면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점 등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해진다.⁸⁾ 그러나 이 점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비하여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기구의 성격상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당해 ADR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하고 싶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정형 ADR의 장점은 그 표리의 관계로서 당해 기관이 중립 공평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⁹⁾ 즉 행정형 ADR에서의 행정에 의한 후견적 관여에는 한계가 있고 재판에 대한 예측을 넘어 재판에 선행하는 해결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행정의 후견성에 과도하게 의지하려고 한다면 당해 기관의 중립공평성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

다.¹⁰⁾ 달리 말하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분쟁조정신청을 일종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의식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¹¹⁾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기구의 규모나 설립 근거법규를 본다면 다른 행정형 ADR기관과는 달리 보다 독립적인 기관이라고도 생각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¹²⁾ 당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독립적인 지위를 한층 확고하게 할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배제는 그 밖의 행정형 ADR기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ADR의 발전방향 1

- 재판과 ADR의 연계

1. 재판의 역할

위에서는 주로 ADR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ADR의 개선방안이다. 이에 관하여는 먼저 ADR과 재판 간의 역할의 차이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재판이 당사자의 각종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다면 ADR을 논의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재판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불량품에 해당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재

8)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하여도 유사한 점이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는 金祥洙, 集團調停による 消費者紛争の解決—韓國における實情について, 民事研修619號(2008)2면 이하 참조.

9) 우동기=장영두,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협상연구5권2호(1999) 43면에서 위원들의 구성이 중립적이지 아니하여 관주도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0) 加藤新太郎, 전제(주)13면.

11)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安岩法學22호(2006)298면 이하. 이 문헌에서는 '법원에 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준비도 힘이 드는데 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2) 언론중재위원회, 2008 연간보고서17면.

판 자체의 특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 자체에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ADR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ADR은 재판과는 동일한 분쟁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판과 상이한 점을 갖고 있다. 전자는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통점을, 후자는 절차의 내용과 운영주체에서의 차이점을 각각 가리킨다. 재판은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운영한다. ADR은 반드시 공적 기관이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도운영의 공정성은 ADR에서의 필수조건에 해당되고, 재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에 관한 주도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ADR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 갈음한다는 분쟁처리수단이 오히려 재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재판은 ADR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수단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ADR이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단순히 간이·신속한 처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재판의 약점은 3심제를 통해야 한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ADR에 의한 해결이라고 해서 단순히 간이·신속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분쟁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확실성 내지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¹³⁾

2. 법원부속 ADR

그런데 재판과 ADR이 현재와 같이 거의 독자적이고 상호 무관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으로는 착실하고 적합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해결방법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재판과 ADR의 연계를 통한 처리방법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즉 재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은 재판으로 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이 ADR로 사건의 처리를 회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원은 관할의 독점욕(jurisdictional jealousy)을 갖지만, 과감히 계속분쟁을 ADR로 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에서 ADR로 사건을 회부한다고 하면 민사조정과 가사조정 등 판사가 관여하는 일종의 법원부속 조정만이 인정되고 있다.¹⁴⁾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은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ADR기관으로 언론분쟁사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이 자신에게 부속된 분쟁을 ADR로 회부하는 제도를 말하고, ADR 선진국인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제도이다(보통 법원부속중재(Court-Annexed Arbitration)로 불린다). 법원부속ADR은 조정전치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소송절차 진행 이전에

13)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磯部力, 公害環境紛争と行政委員會 - 公害等調整委員會の課題と可能性, ジュリスト1233호(2002) 59면 이하(이하에서 다루는 일본의 공해등분쟁조정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공해환경분쟁에 관한 풀패키지 해결, 즉 광의의 공해환경분쟁을 폭넓게 받아 들여 해결의 테이블에 올리고, 전문적 조사에 바탕된 설득력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개별안전의 일회적 해결만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이용질서의 물까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14) 정규상, 전주(1)141면에서는, 법원부속ADR 운영에 관한 지적으로서 “구체적인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제도당시에 쟁점이나 증거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건수가 많게 되면(현재는 법원부속의 ADR제도로써 소송상화해와 조정이 인정됨) 법원이 사건에 대한 조정적합성의 실험적 분석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건을 조정에 끌어들여 실적위주의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법원에 의해 중재절차로의 회부)을 말한다.¹⁵⁾ 여기서 말하는 중재는 통상의 중재와는 달리 중재에 대한 참가가 강제적인 점, 중재판정에 대한 구속력 측면에 있어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때 법원에 대한 상소에서 당해 중재절차보다 일정 비율(10%~20%)의 유리한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면 제재가 부과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중재의 결과보다 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그대로 중재판정을 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부속ADR은 1952년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현재 각 주에서 이용되고 있다.

V. ADR의 발전방향 2 -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

1. 편면적 중재의 의의

ADR의 발전방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편면적 중재이다. 편면적 중재란 기본적으로 중재인(또는 조정인)이 중재(또는 조정)를 하고 그것이 화해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조정인이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을 제시하게 된다. 이 판단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청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양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판단에 구속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가리킨다.¹⁶⁾

이러한 편면적 중재는 분쟁당사자 간에 정보나 교섭

력에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 측 등이 ADR을 신청하는 경우에 절차의 장기화를 피하고 교섭력에 만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능가할 정당성이 필요하게 된다.¹⁷⁾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본 법원부속중재제도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업계단체의 ADR기관으로서의 자주적 분쟁처리기관(Self Regulatory Organization)에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증권분쟁의 중재를 처리하는 NYSE(New York Stock Exchange)나 NASD(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딜러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협회에서 제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을 얻어도 겪을 수 있는 집행의 곤란이나 집행비용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¹⁸⁾ 그 밖에 NFA(National Futures Association)에서는,¹⁹⁾ 상품선물거래분쟁에 관하여, 투자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적 중재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투자가가 요구하면 선물협회 멤버는 강제적으로 중재에 응하여야 한다. 이 점은 아래에서 보는 일본에서의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에서의 제정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선물거래분쟁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투자가는 이에 구속되지만, 일본의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의 제정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구속되지만 청구자인 피해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편면중재와 유사한 분쟁처리를 하는

15) 약간 오래 되었지만 미국의 위와 같은 법원부속ADR을 소개하는 글로서, 金祥洙, 紹介: John P. McIver et al., Special Issue; Court-Annexed Arbitration, 14 Justice System Journal 123-250(1991), 名大法政論集152호(1994)543면 이하 참조. 또한 앞의 주(1)의 문헌도 있다.

16) 山本和彦=山田文, 전주(8)369면.

17) 山本和彦=山田文, 전주(8)369면.

18) 金祥洙, 證券仲裁(1997, 信山社)17면 참조.

19) 金祥洙, 商品先物取引と仲裁, 先物取引研究第4巻第2號(2000)6면 이하.

ADR기관으로서 1973년에 설립된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²⁰⁾가 있다.²¹⁾ 여기서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 화해의 알선 및 심사를 한다.²²⁾ 위 센터에서는 주로 화해로 분쟁처리를 유도하는데, 화해를 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알선절차 등이 개시된 후에 다음의 사정이 판명되면 알선절차 등을 정지한다. 즉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치료중인 경우, (2) 치료는 종료되었지만 후유장애등급 인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후유장애등급 인정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후유장애등급인정절차에 관하여 분쟁처리기구에 신청 중인 경우이다.

2. 편면적 중재 도입의 전제조건

편면적 중재는 위의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피청구인 측의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그 정당성은 피청구인 측의 양해(중재나 조정의 결과를 따르겠다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일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편면적 중재를 도입한다면, 그 가장 용이한 방법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언론매체 간의 협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해결안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곤란하다면, 언론중재법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더 공정 타

당한 ADR기관으로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그것이 언론매체 등 피청구인 측의 제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조건 중의 중요한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ADR기관에서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절차주재자²³⁾의 구성과 자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대개 당해 위원회가 조정기관임과 동시에 위원회는 소수의 위원이 개별 사건의 조정위원도 겸하고 있고, 이는 법원이 운영하는 민사조정 또는 가사조정에서 법관이 조정위원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단, 법원의 조정의 경우에는 법관만이 조정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민간인도 조정위원으로 참가한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은 소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와 같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각 사건의 조정위원이 되고 나아가 위원장이 선정한 비상임조정위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규모에 맞추어 조정위원 후보자로부터 적당한 수의 조정위원을 당사자가 선정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분쟁처리위원회는 관련 분쟁의 처리에 적합한 조정위원후보자의 풀을 각 지역마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주재자의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ADR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절실한 문제는 ADR의 절차주재자의 자질 내지 스킬을 어떻게 확보

20) 財團法人 交通事故紛爭處理センター. www.jcstad.or.jp.

21) 이에 관하여는 小島武司=伊藤眞, 裁判外紛爭處理法(1998, 有斐閣)123면 이하; 山本和彦=山田文, 전주(8) 222면 이하.

22) 단, (1) 자전거의 대보험자, 대자전거의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2) 담승자상해보험이나 인신상해보상보험 등 자신이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과의 보험금,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배상책임보험 후 후유장애의 등급인정에 관한 분쟁은 다루지 않는다. 또한 (1) 상대방이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계약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공제)에 시담대행서비스가 없는 경우, (3) 상대방이 계약하고 있는 공제가 JA공제연합 또는 전로제(全勞濟) 이외인 경우에는 분쟁의 상대방이 센터에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알선절차 등이 불가능하다.

23) '절차주재자'란 생소한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재판절차의 경우 법관을, ADR절차의 경우 직접 중재나 조정 등을 하는 중재인 또는 조정인은 물론 그 후보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법관과의 차이점은 당사자는 법관을 선택할 수 없지만, ADR에서는 절차주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인지에 관한 점이다.²⁴⁾ ADR절차의 주재자는 새로운 전문직의 일종이고, ADR기관이 중심이 되어 그 내실을 형성하고 교육이나 훈련의 프로그램을 책정하며 윤리규범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기반정비가 필요하다.²⁵⁾ 재판에서 법관의 자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ADR에서도 절차주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그만큼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VI. ADR의 발전방향 3

- ADR기관 간의 상호연계

위에서 본 절차주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ADR기관 간의 상호연계이다. 또한 법원을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ADR은 각각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의의 집합이므로 상호 연계하지 않으면 다면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⁶⁾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상호연계를 책임질 대표기관이 필요하다.²⁷⁾

연계담당기관에서는 절차주재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사례를 이용한 연구와 의견교환, 새로운 ADR절차의 개발, 외부에 대한 ADR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⁸⁾ 연계기관이 기능하게 된다면 각 ADR기관의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갖는 ADR기관에 의한 복안적(複眼的)인 논의가 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ADR실무의 질적 양적 향상이, 장기적으로는 ADR업계 전체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R기관 간의 구체적인 연계로서 각 ADR기관의 전문성을 횡단적으로 상호 연계시키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DR은 분쟁의 성격이나 절차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분쟁의 해결은 복수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러한 전문성이 다른 ADR기관과의 사이에서 상호의 원조, 절차주재자인 panel의 공유나 분쟁의 이행 등의 협력태세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VII. 결 어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행정형 ADR기관으로서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ADR기관 사이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에서의 당사자의 자주성 결여라는 현상이나 ADR기관 간의 연계수단의 부재라는 현상에서 본다면, 앞으로 ADR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원과 ADR의 연계로서, 법원이 담당하는 많은 사건 중의 일부를 ADR기관에 회부하는 법원부속ADR제

24) 加藤新太郎, 전계(주9)19면 이하.

25) 山本和彦=山田文, 전계서(주8)393면.

26) 山本和彦=山田文, 전계서(주8)394면.

27) 일본의 경우 ADR의 포털 사이트로서 ADR Japan(www.adr.gr.jp)이 있고, 여기서는 연계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비자상담에서 중재기관까지 여러 분야의 분쟁처리기관의 종합창구역활을 하고 있다.

28)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山本和彦=山田文, 전계서(주8)394면.

도의 도입이다. 법원은 이미 소송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고 있으므로 ADR기관으로 회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ADR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로서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편면적 중재는 실질적으로 조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게 되고 결국 ADR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분쟁처리위원회라는 명칭에도 걸맞고 조정이나 중재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편면적 중재제도 등을 포함하는 ADR에서의 분쟁해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절차주재자의 중립성 확보와 자질향상이 중요하다. 자질향상과 관련하여서는 각 ADR기관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불가결하고 이것이 세 번째 방안에 해당된다. 절차주재자의 확보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이끌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ADR간 상호연계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널 토론

▷ 김 정 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중재위원뿐만 아니라 조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최근 들어 매우 고무적이다.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도 크게 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각 중재부에서 다루는 사건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재율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언론중재위가 언론보도에 의한 분쟁조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은 가장 모범적인 ADR 제도의 사례라고도 보여진다.

언론중재위원회가 ADR 조직으로서 운영적 측면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중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보편성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관

들의 직무와 관련한 능력의 우수성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심의는 법률적 차원보다는 상식적 차원에서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ADR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미니법정이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청원을 듣고 나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는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재위원은 옳고 그름의 진위를 구분하는 능력보다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보아진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중재위원 위촉 및 구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언론조정·중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조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중재위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면 조사관들은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런 자료 준비가 최종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조사관들의 사전 조사가 불충실하면 중재위원들에게서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중재위원과 조사관들은 ADR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끌고 가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양대 축은 매우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서 정 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분쟁종합지원센터장)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분쟁의 해결, 간이·신속성·경제성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고려, 탄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분야별 통합적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는, ADR기관 간의 연계수단의 부재라는 현상에서 본다면, 앞으로 ADR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법원과 ADR의 연계로서, 법원이 담당하는 많은 사건 중의 일부를 ADR기관에 회부하는 법원부속 ADR제도의 도입, 두 번째 방안은 ADR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로서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 고려, 세 번째로는 편면적 중재제도 등을 포함하는 ADR에서의 분쟁해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주제자의 중립성 확보와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ADR에 관하여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제발표자의 견해와는 다소 견해차가 있다고 본다.

첫째, ADR제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ADR이 실패할 경우 절차가 이중적으로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행정형 조정 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차트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없는 것인가? 법과 원칙을 경시한 2급 정의(second-class justice)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ADR을 이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로 편면적

중재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편면적 중재는 보편성있는 제도라기보다는 소비자분쟁해결(Consumer Arbitration)에 흔히 이용되는 것으로, 기업체는 중재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무조건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나 소비자는 중재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는 방안은 제한적인 분야에 적합한 중재운용인 바, ADR의 일반적인 발전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셋째, 글로벌체제에 부합한 조정, 중재의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ADR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ADR법 제정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의 분야별 통합 방안 -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분쟁의 해결, 간이·신속성, 경제성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인터넷진흥원 소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확충하여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상사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무역분쟁 및 국내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소비자과 관련한 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등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합적 조정중재의 도입 방안 -

선행적 요건으로 ADR의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제도운영이 필수적이기에 중재법상 지정된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결합적 제도운용이 효율적이다.

▷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ADR이 재판을 보완하는 절차로 태동하였지만, 경제적이고 쉽고 유연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의미를 살려가야 한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가 우리나라 ADR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인데 저는 ADR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ADR은 경제적이고(economic), 쉽고(easy), 유연한(flexible) 절차이다.

경제적이라는 뜻은 단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절차에 들이는 돈, 시간, 노력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ADR은 쉬운 분쟁해결의 수단이다. ADR과 항상 대비되는 법원의 재판절차라는 것이 돈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매우 어렵고, 게다가 법원은 소극적이고 불친절한 심판자인 측면이 있다.

셋째로, ADR은 유연한 절차이다. 이 점은 쉽다는 측면과도 일맥상통한다. 조금 전에 김정탁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사건인데 최근 저희 위원회에서 일명 ‘미수다’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오늘 오전에도 해당 사건의 심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면 해당 보도에서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원회 조정에서는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ADR의 이러한 성과를 고려할 때 이제는 그 명칭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는 절차로서 ADR이 태동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언제까지 ADR을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재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라고만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법원 소송의 아류, 2인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ADR 고유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만한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생

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EDR(easy dispute resolution, economic dispute resolution), PDR(peaceful dispute resolution)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께서 이미 지적해주셨지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ADR은 법원의 소송사건에 비해서 양적으로 턱 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인식이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하면 법원의 ‘소송’을 떠올릴 것인데 홍보를 통해서 ADR의 장점을 적극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음으로,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연합체 구성에 관해서는 먼저, 각 위원회나 조정기관 사이에 연합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각 기관이 모여서 뭘 할 것인지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연합체 구성의 목적으로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ADR 절차법을 만드는 것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제안 사항 중에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을 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 편면적 중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직권조정 결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 장 수 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행정형 ADR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만들거나, ADR지원센터 및 ADR포털 사이트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ADR기관 상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의 ADR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재판과 ADR의 연계에 대하여 -

법원부속형 ADR의 하나로 법원부속중재(Court Annexed Arbitration)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ADR제도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사자는 본래 재판에 의한 해결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는데,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민사조정법 또는 언론중재법 등 관련 개별 법률 개정 시 위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

편면적 중재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ADR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언론매체 간의 협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해결안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발제자께서 제안해 주신 ADR 절차주재자의 구성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절차주재자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요건, 관리, 정기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구성된 조정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여 당사자가 적정 수의 조정위원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은 ADR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다른 ADR기관에서도 기관 특성에 맞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DR기관 간의 상호 연계에 대하여 -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ADR기관 간의 상호 연계는 현실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ADR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연계를 담당할 대표기관(또는 연계담당기관)을 설치하여,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ADR 실무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ADR기관 전체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ADR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ADR기관 상호 연계방안 마련 -

행정형 ADR 기관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 교환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행정조정기관협의회’를 만들거나, ADR 조직을 통괄하는 기능을 하는 종합적 ADR 지원센터를 마련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

ADR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행정형 ADR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ADR 포털 사이트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일본의 ADR-Japan 참조).

행정형 ADR 통합 법률 제정 추진 -

사실조사권 및 자료요청권 인정, 조정 절차, 효력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법률 마련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민사조정법, 중재법 외에 조정에 관한 일반법 내지는 대체적 분쟁처리법(또는 모델법안)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수인 관련 집단 분쟁해결제도 도입 -

동일한 원인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당사자가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 ADR기관에서도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건 처리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사건 처리의 지연과 비효율성이 발생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ADR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수인 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함윤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판사)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 외부의 ADR 기관으로 사건을 회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DR확대의 필요성 -

ADR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정식 소송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의 이상적 구현을 위해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실제진실 발견을 위한 1:1 대립구조가 감정대립을 유발하고 다자간 이해관계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점, 고정적·비탄력적 법률에 의한 일도양단의 결론이어서 변동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결국 정식 소송은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것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하여는 그에 걸맞은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ADR이 활용되어야 할 다른 요인들이 있다. 최근 법원 전체에 부과되는 업무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양적으로는 소송사건 접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소송사건의 국제화·전문화·다양화·대규모화로 업무의 강도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 결과, 신속·원만한 처리가 요청되는 사건도 처리가 지연되는 한편, 고난이도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환경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결국 모든 분쟁이 정식소송으로 집중되는 것은 한정된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ADR의 발전방향 -

앞으로 우리나라의 ADR이 가야할 방향은, “법원

과 따로, 그러나 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조정 그 자체는 법관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 법관이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조정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추상같은 논리를 앞세워 판결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측면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의 판결대체적 효과(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비추어, 법원과의 연계 없이 ADR의 실효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요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론은, 결국 법원에 의하여 사건이 관리되고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는 법원부속형·법원연계형 ADR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올해 4월에 서울과 부산에 새로이 설치한 “조정센터”는 앞으로 ADR의 발전방향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판부가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기실 지난 2008년에는 전국 민사재판부에 의하여 처리된 실질사건 중 40%에 육박하는 사건이 조정·화해에 의하여 처리되었고, 그 대부분은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화해였다. 앞으로는 법원내부 조정이 아니라 외부 ADR기관의 절차에 회부하고 그 기간 동안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 경우 우선은 현행법률 내에서도 외부 ADR기관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로 유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법원 심리와 조정기관 사건과 약 중복으로 생기는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당사자의 절차선택권 없는 일방적 회부결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제약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법원의 적극적인 조정회부보다 더 좋은 방향은, 결국 국민들이 먼저 소장이 아니라 조

정신청서로 제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 -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ADR의 미래를 상징하는 조정센터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설치의 조직법적 근거와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조정이 되려면 조정센터가 법원 내부가 아니라 주민조정센터로 독립·확산될 필요가 있고, 법률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법률구조공단 및 나홀로소송 지원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며, 행정형 ADR기관과의 연계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과다하게 많은 행정형 ADR기관의 정리와 자원집중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다.

▷ 홍 승 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ADR이 더욱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ADR의 모델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발제자의 의견 중 ADR 기관의 상호연계는 중요한 지적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ADR의 주요 기관이라고 보이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ADR의 효능과 업무를

연계하고 또한 사안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ADR의 활성화에 지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편면적 중재 주장은 다소 생경해 보인다. 오히려 언론중재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조정이 당사자 간의 임의적 분쟁해결 방식인 만큼 조정성립률에 집착하는 것은 ADR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ADR 제도는 당사자에게 절차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그 비용을 국가 예산 등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ADR 기관에서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직권조정(혹은 강제조정) 결정을 하되,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 성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만일 이의를 하는 경우 언론중재법의 예에 따라 제소를 의제할지, 아니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할지 여부는 다시 논의할 문제이다. 사안에 따라 일정한 ‘이의 기간’ 동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감성적으로 조정을 거부하였던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의 성립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ADR 기관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제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ADR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ADR의 모델법을 만들고 그 모델법에 따라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종합토론

▷ 김상수 (발제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로서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식에 기초한 분쟁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언론중재위원회 김정탁 위원님

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조정에 있어 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점이 행정형 ADR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윤식 판사님의 의견은 법원도 ADR에 대해 긍정적이며 법원부속형 내지 법원연계형 ADR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쏟고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법원과 ADR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홍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정결과에 집행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께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직권조정결정 제도와 편면적 중재제도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면적 중재는 중재결과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언론중재법상의 직권조정결정과 편면적 중재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법원부속ADR이 현행법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민사조정법을 개정하여 법원은 대법원이 인증한 조정기구에 민사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면적 중재는 현재로서는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편면적 중재를 받겠다는 협정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DR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당사자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이 경시되는 소위 '2급정의'에 머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가 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DR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분쟁해결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결합적 조정중재(Med-Arb)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재의 최대 약점은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를 받겠다는 조항이 삽입된 계약형 분쟁의 경우 중재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불법행위 유형의 분쟁의 경우 중재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편면적 중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박순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조사관)

조정제도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와 지정토론 내용을 듣다보니 ADR의 주 모델은 재판관이 조정절차를 주도하는 사법형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정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보다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황덕남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변호사)

내용상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송보다는 ADR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큰

무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송건수 등을 비교한 통계를 접한 바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소송건수와 조정건수는 약 130여만 건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90여만 건입니다. 두 나라의 인구비율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원 분쟁건수는 일본의 4배(소송건수는 일본의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집니다. 일본의 경우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가 약 15%를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가 0.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송일변도적인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 간의 의식차이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는 분쟁당사자의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든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든지 또는 사회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관 주도형 분쟁해결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ADR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이러한 대결주의적인 국민의식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염규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ADR의 경우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ADR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조서에 재판에 따른 기판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정도는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R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일반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조정제도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 박영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분쟁조정인증팀 수석)

전자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한해 현재까지만 거래규모가 약 630조에 달하고 있고 전체 거래의 25%가 전자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관련 분쟁의 조정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의 일선에서 접한 전자거래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10~20만원 사이 상품의 반품 관련 분쟁입니다. 문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밖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했음에도 당사자 중 한 쪽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커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영 (사회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는 것과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실무상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ADR을 통해 민사상 화

해계약이 성립된 사안인데도 이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진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계약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는 판결을 어렵지 않게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수태 (지정토론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다행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고 있지만 조정결과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박순미 조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순수한 조정이란 양당사자가 있는 분쟁에 객관적인 제3자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안 자체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정의 효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오늘 발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법원과 ADR의 연계나 앞서의 박영희 수석께서 밝힌 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조정제도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정일 (지정토론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박순미 조사관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ADR은 무엇보다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ADR은 민간주도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앞서 염규석 분쟁조정실장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사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

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조정합의를 하면서 ‘만일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재법의 경우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로 중재기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순수 민간형 ADR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을 시도, 합의를 이뤄내되, 만일 합의사항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 김정탁 (지정토론자, 언론중재위원,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당사자가 민사상 합의의 효력만 부여받는 조정결과에 예를 들어 “만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합의조항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합의조항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위원들이 분쟁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조정과정에서 조정인들이 법원의 판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안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보여준다면 당사자들이 사안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함윤식 (지정토론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물론 10~2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이 법원이나 법원조정센터로 몰려온다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한

편으로 만일 조정결과에 집행력을 부여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모두 그 소액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가가 분쟁 해결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라는 이유라 거래를 부주의하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력까지 부여해주는 것과 같은 해결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승기** (지정토론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저는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효력은 부여되어야 심정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직권조정결정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불성립결정밖에 할 수 없는데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조정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ADR의 효력이나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과 같은 부분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모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에는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정이란 자기가 승복한 것은 스스로 따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쏟았음에도 합의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강제조정을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정을 최대한 해보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정의 성격을 지금부터라도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발제자께서는 ADR기관 간의 연계를 언급하고 계시지만 연계는 ADR기관들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조정센터와 같은 이미 만 들어져 있는 조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ADR제도도 이제 분쟁조정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하는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의 성공률보다 조정의 만족률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강제로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론중재위원회가 여러 분쟁조정기관 관계자들을 모신 가운데 ADR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985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민사조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컸고 그로 인해 사법불신이라는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발적으로 몇 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던 민사관계 조정 조항들을 기초로 민사조정관련 법안

을 성안했습니다. 그것이 그 뒤 국회를 통과하여 민사조정법으로 확정되었고 올해 비로소 법원조정센터까지 발족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은 언론분쟁을 다루는 위원회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책임자로 취임해보니 언론분쟁에 관한 위원회의 조정이 대단히 보람 있고 성공적인 절차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다른 기관에도 파급해서 국민들이 분쟁을 소송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바꾸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협력체제를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다른 기관도 이러한 ADR기구 간 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대체로 ADR기관 간 협력과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심포지엄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협조와 협의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나라 조정·중재제도가 우리사회에서 훌륭한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협력과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몇몇 기관은 조정이나 중재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기관은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ADR에 대한 홍보는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기관에 대한 소개나 절차안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승자가 되

겠다는 대결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며 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DR기관 간 협조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ADR기관 간에 조정절차나 조정결과의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R의 절차나 효과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ADR기관 간의 공통적인 대처리 협조체제를 통해서만 보다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효과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보람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DR을 활성화시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얼마 전에 인터넷포털 뉴스를 언론조정·중재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계 다른 영역에서의 분쟁을 조정과 중재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정과 중재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공동의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정·중재제도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한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